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84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59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5장(제12조 및 제13조)을 삭제한다.

제19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별표 1,2,3,4”를 “별표 1,2,3”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 ----- ----- ----- ----- ----- ----- ----- -----.
제2조(적용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① 이 고시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u>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폐플라스틱재활용 원료</u> ② 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다음 각 호	제2조(적용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 ----- -----.

<삭 제>

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4
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
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의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
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7조(폐유리의 이용율 향상) ① (생
략)

②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별표 1의
폐유리용기이용목표율에 상당하
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
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에서 사
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유
리용기를 회수·재활용하여야 한
다.

제5장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

제12조(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
용률 향상) 영 제33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플라스틱 중 페트(P
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
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경
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폐플
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

⑥ (현행과 같음)

제7조(폐유리의 이용율 향상) ① (현
행과 같음)

② ----- 별표 2-

-.

<삭 제>

<삭 제>

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연도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정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폐플라스틱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①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이하 “플라스틱제품생산자”라 한다)는 회수된 폐플라스틱의 분리 및 폐플라스틱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플라스틱의 제조·사용을 플라스틱제품생산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삭 제>

제19조(재검토기한) -----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6년 7월 1일-----

-----.